

제2025-100호 2025년 11월 20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76호 |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쌍봉천)(제2025-14호)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77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7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79호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5-480호 |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72호 |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74호 |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주식회사 광성개발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78호 | 2026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알림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80호 | 도로지정 공고[고소동346-1번지 외 4필지]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85호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86호 | 2025년 연인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2차)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9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298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09호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11호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15호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화양읍적)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1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17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20호 |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25호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27호 | 도로지정 공고삼산면 서도리 1278번지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32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주)신송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41호 | 2026-2027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안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43호 | 2025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45호 |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화양면 안포~굴구지 농어촌도로(302호선) 개설(1공구))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48호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테크 주식회사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50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352호 |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공고 |

읍면동,사업소

- | | | |
|-------------|----------|----------------------|
| ○여수시 화정면 공고 | 제2025-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476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쌍봉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5-14	쌍봉천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여수시 주삼동 332-1, 838-15, 선원동 576-1, 576, 화장동 171-13번지	공사 중 361, 공작물 (세굴방지블록) 170	화장고가교 교각 세굴 방지를 위한 블록 설치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5. 12. 30. 공작물 허가일로부터 ~ 영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14.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4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24 (2025. 9. 26.)	2025. 11. 14.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실시계획 승인일	2026.3.25.	소호동1181-4번 지 일원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가도 및 임시적치장 설치
2025-32 (2025. 11. 11.)	2025. 11. 14.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실시계획 승인일	2027.11.10.	소호동1181-4번 지 일원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시설항로표지 설치

2025. 11. 14.

여 수 시 장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고시

여수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회계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Δ)	
			증감(Δ)	증감율
계	2,005,314	1,933,720	71,594	3.7 %
일 반 회 계	1,747,004	1,711,008	35,996	2.1 %
특 별 회 계	258,310	222,712	35,598	16.0 %

○ 기금운용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Δ)	
			증감(Δ)	증감율
기 금	154,604	154,434	170	0.1 %

2025. 11. 18.

여 수 시 장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관광진흥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일

여 수 시 장

1.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 1부.
2.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도 : 게재생략 (여수시 관광과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여수시 관광과에 비치)
4. 토지 세목조서 1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조성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여수시 관광과(061-659-3881)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1. 관광단지 지정

- 가. 관광단지명 :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평사리 1538번지 일원
- 다. 지정 면 적 : 1,193,190㎡
- 라. 지 정 일 : 2025.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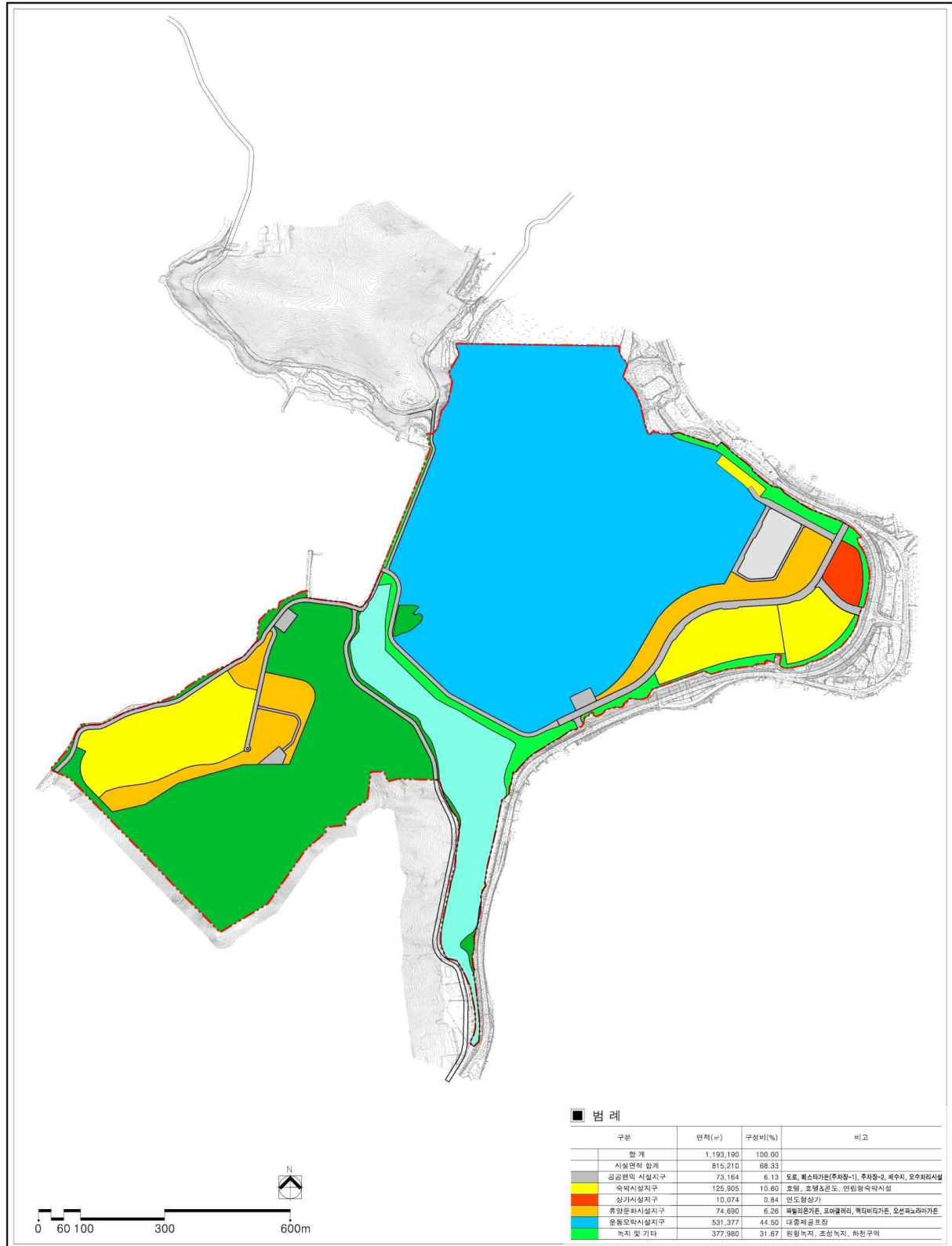
2. 조성계획 승인

- 가. 조성 면 적 : 1,193,190㎡
- 나. 사업 기간 : 2022년 ~ 2030년
- 다. 총 사업 비 : 898,500백만원 (민자 100%)
- 라. 시 행 자 : (주)여수레저개발
-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
 - 1) 토지이용계획 총괄

시설지구	면적(㎡)	시 설 내 용	구성비(%)	비 고
총 계	1,193,190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73,164	도로, 페스타가든(주차장-1), 주차장-2, 배수지, 오수처리시설 등	6.1	
숙박시설지구	125,905	호텔, 호텔&콘도, 연립형숙박시설-1, 연립형숙박시설-2, 일반숙박시설(골프텔) 등	10.6	
상가시설지구	10,074	연도형상가	0.8	
휴양문화시설지구	74,690	파빌리온가든, 모아갤러리, 동백숲가든, 오션파노라마가든	6.3	
운동오락시설지구	531,377	대중제골프장(18h)	44.5	
기타시설지구	377,980	조성녹지, 원형녹지, 하천구역 등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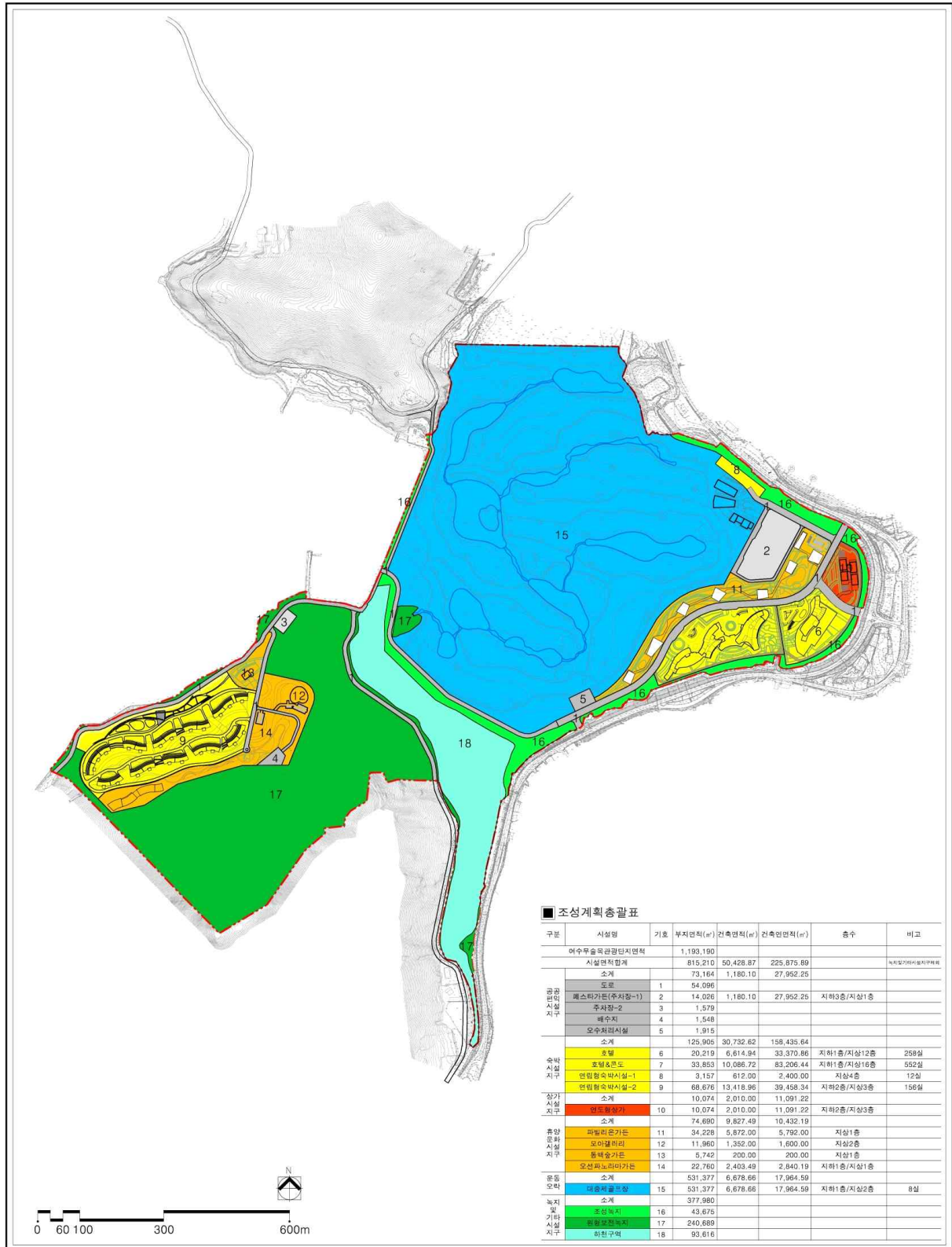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S = 1/4,000)



3) 조성계획총괄도

조성계획총괄도 (S = 1/4,000)



4) 시설배치계획

시설 지구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물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193,190	50,428.87	225,875.89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 계	73,164	1,180.10	27,952.25	
	도 로	54,096	-	-	
	페스타가든(주차장-1)	14,026	1,180.10	27,952.25	지하3층/ 지상1층
	주차장-2	1,579	-	-	
	배수지	1,548	-	-	
	오수처리시설	1,915	-	-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125,905	30,732.62	158,435.64	
	호텔	20,219	6,614.94	33,370.86	지하1층 / 지상12층
	호텔&콘도	33,853	10,086.72	83,206.44	지하1층 / 지상16층
	연립형숙박시설-1	3,157	612.00	2,400.00	지상4층
	연립형숙박시설-2	68,676	13,418.96	39,458.34	지하2층 / 지상3층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10,074	2,010.00	11,091.22	
	연도형상가	10,074	2,010.00	11,091.22	지하2층 / 지상3층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74,690	9,827.49	10,432.19	
	파빌리온가든	34,228	5,872.00	5,792.00	지상1층
	모아갤러리	11,960	1,352.00	1,600.00	지상2층
	동백숲가든	5,742	200.00	200.00	지상1층
	오션파노라마가든	22,760	2,403.49	2,840.19	지하1층 / 지상1층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 계	531,377	6,678.66	17,964.59	
	대중제골프장	531,377	6,678.66	17,964.59	지하1층 / 지상2층
기타 시설	소 계	377,980	-	-	
	조성녹지	43,675	-	-	
	원형녹지	240,689	-	-	
	하천구역	93,616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951,266	-	951,266	100.0	-
녹지 지역	소계	412,091	-	412,091	43.3	-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자연녹지지역	412,091	-	412,091	43.3	-
관리 지역	소계	420,960	증) 118,215	539,175	56.7	-
	보전관리지역	87,580	감) 87,580	-	-	-
	생산관리지역	323,665	감) 312,554	11,111	1.2	-
	계획관리지역	9,715	증) 518,349	528,064	55.5	-
농림지역		117,985	감) 117,985	-	-	-
미지정		230	감) 230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528,06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22-1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28,064	200이하	•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 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하고자 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200이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200이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49-1 일원	농림지역			200이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13-2번지 일원	미지정			200이하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8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번지 일원	-	증) 412,091	412,091	
49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	증) 539,175	539,175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8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 면적 : 412,091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49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 면적 : 539,175㎡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시계획시설)

- 소로1-451은 사업대상지 서측 농어촌도로 210호선을 반영한 동선계획으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관습 도로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기 지정된 하천시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지만 본 사업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없음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	1,046	10,450	1	1,046	10,450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1,046	10,450	1	1,046	10,450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등급	류별	번호										
신설	소로	1	451	10	국지	1,380 (1,046)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27-7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08-5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1,046m	도시 계획시설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연장임

(1)

(2)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451	· 노선신설 · B=10m, L=1,046m	관광단지내 교통체계 확보를 위한 도로신설

※ 도로번호는 임시번호임

2)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가)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⑮	하천	지방2급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297번지선	전남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방조제	-	5,240 (183)	5-93 (30-85)	179,100 (11,111)	전고2008-259호 08.10.31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도시 계획시설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연장, 폭원, 면적임

다-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비도시계획시설)

- 단지 내 시설은 관광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않고 지구단위
계획상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 등으로 관리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1	3,335	40,014	4	1,276	13,781	3	1,040	17,487	4	1,019	8,746
대로	-	-	-	-	-	-	-	-	-	-	-	-
중로	4	1,280	21,168	-	-	-	3	1,040	17,487	1	240	3,681
소로	7	2,055	18,846	4	1,276	13,781	-	-	-	3	779	5,065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등급	류별	번호										
신설	중로	2	(1)	16	보조	125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74m 지구단위계획구역49 : 51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중로	2	(2)	16	보조	89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12-16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2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228m 지구단위계획구역49 : 663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중로	2	(3)	16	보조	24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2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24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중로	3	(1)	12	집산	240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12-6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240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1	(1)	10	국지	179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179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1	(2)	10	보조	67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672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1	(3)	4.6~ 10	국지	120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120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1	(4)	10	국지	305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22-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49-1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305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3	(1)	7	국지	346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253m 지구단위계획구역49 : 93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3	(2)	6	국지	240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8 : 240m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소로	3	(3)	6	국지	193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49-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22-2	일반 도로	-	-	지구단위계획구역49 : 152m	비도시 계획시설

※ 신설 도로번호는 임시번호임

(2) 주차장(변경)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페스타가든 (주차장-1)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	증) 14,026	14,026	-	지구단위 계획구역48	비도시 계획시설
신설	②	주차장-2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22-1 일원	-	증) 1,579	1,579	-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비도시 계획시설

3) 유통·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변경)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배수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08-6 일원	-	증) 1,548	1,548	-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비도시 계획시설

4) 환경기초시설(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1	비고2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9 일원	-	증) 1,915	1,915	-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비도시 계획시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1	비고2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관광 휴양시설 용지	숙박 시설 용지	A	1	3,157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12-7 일원	연립형 숙박시설-1	지구단위 계획구역48
			2	1,468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호텔	지구단위 계획구역48
			3	18,751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호텔	지구단위 계획구역49
			4	33,853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호텔&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49
			5	68,67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49-13 일원	연립형 숙박시설-2	지구단위 계획구역49
	상가 시설 용지	B	1	10,074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연도형 상가	지구단위 계획구역48
			1	17,811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파빌리온 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48
	휴양 문화시설 용지	C	2	16,417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파빌리온 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49
			3	5,742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13 일원	동백숲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49
			4	11,960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22-2 일원	모아갤러리	지구단위 계획구역49
			5	22,760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49-1 일원	오션파노 라마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49

구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1	비고2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체육시설 용지	D	1	336,21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200,344	대중제골프장	지구단위 계획구역48
				-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135,872	조성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8
		2	195,161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116,961	대중제골프장	지구단위 계획구역49
				-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78,200	조성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9
공공시설 용지	E	1	14,02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7-2 일원	14,026	페스타가든 (주차장-1)	지구단위 계획구역48
		2	1,915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1,915	오수처리 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49
		3	1,579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22-1 일원	1,579	주차장-2	지구단위 계획구역49
		4	1,548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08-6 일원	1,548	배수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녹지용지	F	1	1,518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일원	1,518	조성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8
		2	642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 일원	642	조성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9
		3	10,405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63 일원	10,405	조성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8
		4	2,70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62-1 일원	2,706		
		5	5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 일원	5	조성녹지	
		6	10,84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26 일원	10,846		
		7	17,361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2 일원	17,361		
		8	192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9 일원	192		
		9	3,392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9 일원	3,392	원형보전 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49
		10	916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1 일원	916		
		11	2,144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1-1 일원	2,144		
		12	1,164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49-21 일원	1,164		
		13	902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08-5 일원	902		
		14	76,384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49-1 일원	76,384		
기타용지	G	15	11,111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3 일원	11,111	하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49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1) 숙박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1 (연립형 숙박시설-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5호의 숙박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숙박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2 (호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5호의 숙박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숙박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3 (호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5호의 숙박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20%이하	
		높이	• 12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 건축물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한다	
		색채 (권장사항)	• 숙박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4 (호텔&콘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5호의 숙박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16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 건축물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한다	
		색채 (권장사항)	• 숙박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5 (연립형 숙박시설-2)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5호의 숙박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 통풍확보를 위해 입면을 분절하여 장변에 의한 차폐 요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치 •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산림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단형 배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고 전면공지는 조경공간으로 조성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숙박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해안선으로부터 50m이상 이격	

(2) 상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B	1 (연도형 상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상가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3) 휴양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	1 (파빌리온가든)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 •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2 (파빌리온가든)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 •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3 (동백숲가든)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	4 (모아갤러리)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5 (오션 파노라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 통풍확 보를 위해 입면을 분절하여 장면에 의한 차폐 요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치 • 자연스러운 경관 창출을 위해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2)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	1 (대중제 골프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부대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2 (대중제 골프장)	건축선	-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용도 :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부대시설 ▶부수용도 :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E	1 (페스타가든 주차장-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8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2 (오수처리 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3 (주차장-2)	건축선	-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4 (배수지)	색채 (권장사항)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건축선	-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배수 관련 시설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4 (배수지)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49
		색채 (권장사항)	•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건축선	-	

■ [별표1]

- 「2035 여수시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해안경관과 잘 어울리는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의 저채도의 주조색을 바탕으로 푸른 계열의 색상 권장
- 건축물의 입지장소 및 형태나 규모에 따라 조화로운 색채범위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자연공간과 연계되는 색채계획 수립
- 과도한 원색 및 그래픽, 광택을 유발하는 외관 재질 및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목재, 석재 등의 건축외벽 재질은 재질 고유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적용
- 지붕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채도 색채계획 수립

< 해안산립권역(대상지 해당) 권장 색채 >

구분	색상	명도	채도	권장 배색 예시
주조색	N, PB, YR계열	8이상	3이하	
보조색	N, YR, Y, PB, P계열	5이상	6이하	
강조색	-	-	원색제한	

< 건축물 입면 색채계획 >

▶ Color Palette

주조색 1 벽돌 1.3YR 1.8/3.1

보조색 2 푸이복중유리 4.5B 8.7/3.6

강조색 3 N9.5

상가시설[연도형상가]

정면도 우측면도

▶ Color Palette

주조색 1 푸이복중유리 4.5B 8.7/3.6

보조색 2 N9.5

강조색 3 목재 6.4GY 9.4/0.7

4 지평외재 6.4GY 9.4/0.7

5 9.4B 3.6/1.0

휴양문화시설 [오션파노라마가든]

정면도 우측면도

▶ Color Palette

주조색 1 푸이복중유리 4.5B 8.7/3.6

보조색 2 N9.5

강조색 3 벽돌 1.3YR 1.8/3.1

숙박시설 [호텔 및 호텔&콘도]

정면도 우측면도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5 (연립형 숙박시설-2)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가막만의 해안경관을 고려 건축한계선으로 이격되는 부지를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에 준하는 녹지로 조성하여 해안생태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해안변 숙박시설용지의 녹지조성 시 인접 녹지공간과의 조화를 위하여 유사한 수종 및 향토수종으로 식재하고 관광객에게 산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경축	• 통경축 -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축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 통경축은 주동의 배치에 따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좌우 5m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4.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 계		122필지		1,204,878	1,193,190	-	-
1	돌산읍 평사리	1208-10	도	206	206	이○호	여수시 안산동 29 엘지사택 연립-1
2	돌산읍 평사리	1208-1	목	1,441	1,282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119	정○향	순천시 조례동 1611 중흥파크맨션 205-1508
					40	강○경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3	돌산읍 평사리	1208-2	목	903	903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	강○경	학동 50-5 거북맨션 2층 4호
4	돌산읍 평사리	1208-3	목	1,650	1,650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0, 103동 201호(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5	돌산읍 평사리	1208-4	목	747	747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	강○경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6	돌산읍 평사리	1208-5	잡	1,166	469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167 333 30 167	김○자 양○상 강○경 이○호	광양시 광영동 757-1 상아아파트 나-209 순천시 조례동 1630 중흥파크맨션 101-809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4길 26(학동)
7	돌산읍 평사리	1208-6	목	607	607 - 강○경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강○경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8	돌산읍 평사리	1208-7	목	488	488 - 강○경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강○경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9	돌산읍 평사리	1208-8	목	742	293 318 25 106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정○향 강○경 이○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순천시 조례동 1611 중흥파크맨션 205-1508 학동 50-5 거북맨션 2층 4호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4길 26(학동)
10	돌산읍 평사리	1208-9	목	369	369	이○호	여수시 안산동 29 엘지사택 연립-1
11	돌산읍 평사리	1208	전	744	744	임○중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776
12	돌산읍 평사리	1209	대	79	79	임○중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776
13	돌산읍 평사리	1210	답	172	172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722-16
14	돌산읍 평사리	1211-1	창	669	669	임○중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776
15	돌산읍 평사리	1211	전	282	282	임○중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776
16	돌산읍 평사리	1212	전	261	261	김○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722-21
17	돌산읍 평사리	1212-1	묘	99	99	김점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722-21
18	돌산읍 평사리	1213-1	잡	311	311	기획재정부	-
19	돌산읍 평사리	1213-2	도	451	451	기획재정부	-
20	돌산읍 평사리	1213	답	53	53	유○배	천안시 백석동 915 주공그린빌 105-101
21	돌산읍 평사리	1214	임	86	86	방○준	우두리 707-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22	돌산읍 평사리	1215	전	483	483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23	돌산읍 평사리	1216	전	635	635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24	돌산읍 평사리	1217	임	76	76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25	돌산읍 평사리	1218-1	임	7,217	7,217	밀양박시 복야공파 ○중문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0-1
26	돌산읍 평사리	1218-2	임	357	357	박○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204동 504호(청라동, 웰카운티)
27	돌산읍 평사리	1218-3	임	309	309	기획재정부	-
28	돌산읍 평사리	1218-4	도	773	773	기획재정부	-
29	돌산읍 평사리	1218-5	임	66	33	김○옥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193-1 (광무동)
					33	심○구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23-13 (봉산동)
30	돌산읍 평사리	1218	전	182	182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31	돌산읍 평사리	1219	대	122	122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32	돌산읍 평사리	1220	답	952	952	유○명	여수시 군자동 447
33	돌산읍 평사리	1221-1	전	668	322	정○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904동 2302호 (중흥에스-클래스9단지)
34	돌산읍 평사리	1221	전	191	60	이○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195
35	돌산읍 평사리	1222-1	답	510	381	정○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904동 2302호 (중흥에스-클래스9단지)
36	돌산읍 평사리	1222-2	답	425	194	정○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904동 2302호 (중흥에스-클래스9단지)
37	돌산읍 평사리	1222-3	답	139	139	국	-
38	돌산읍 평사리	1222	전	317	300	이○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195
39	돌산읍 평사리	1223	답	224	149	조○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 101동 602호 (시전동, 우미아파트)
40	돌산읍 평사리	1223-2	답	114	30	조○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 101동 602호 (시전동, 우미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41	돌산읍 평사리	1224	답	170	35	조○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 101동 602호 (시전동, 우미아파트)
42	돌산읍 평사리	1226	전	785	543	남○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49-5
43	돌산읍 평사리	1227	전	264	264	박○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31
44	돌산읍 평사리	1228	답	126	14	기획재정부	-
45	돌산읍 평사리	1228-10	임	216	164	박○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31
46	돌산읍 평사리	1228-11	대	102	4	박○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31
47	돌산읍 평사리	1228-14	전	149	94	박○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31
48	돌산읍 평사리	1228-1	대	321	300	박○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33
49	돌산읍 평사리	1228-26	대	196	140	국토교통부	-
50	돌산읍 평사리	1228-9	전	776	636	박○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31
51	돌산읍 평사리	1229	전	370	187	박○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833
52	돌산읍 평사리	1230	전	981	353	이○옥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69
					353	임○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5-36 502호
53	돌산읍 평사리	1230-2	전	551	349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11, 102동 504호 (신월동, 코아루아파트)
54	돌산읍 평사리	1262-1	대	446	446	기○회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87 코아루수아파트 102-903
55	돌산읍 평사리	1263	답	165	165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56	돌산읍 평사리	1264	답	446	446	박○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0-1
57	돌산읍 평사리	1265-1	전	537	268.5	김○준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92-1 (화장동)
					268.5	정○주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92-1 (화장동)
58	돌산읍 평사리	1265-2	답	575	287.5	김○준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92-1 (화장동)
					287.5	정○주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92-1 (화장동)
59	돌산읍 평사리	1265-4	대	354	354	국토교통부	-
60	돌산읍 평사리	1489	도	149	77	건설부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61	돌산읍 평사리	1501	구	13	2	건설부	-
62	돌산읍 평사리	1536-1	목	92,776	92,776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63	돌산읍 평사리	1537-2	목	232,709	232,709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64	돌산읍 평사리	1538-2	도	2,637	2,602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65	돌산읍 평사리	1538-3	목	1,688	1,688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66	돌산읍 평사리	1538	목	224,962	222,835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67	돌산읍 평사리	1539-1	제	71	71	농림축산 식품부	-
68	돌산읍 평사리	1539-2	제	93	93	농림축산 식품부	-
69	돌산읍 평사리	1539-3	제	755	755	농림축산 식품부	-
70	돌산읍 평사리	1539	목	136,058	136,058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71	돌산읍 평사리	1540	구	10,106	8,992	농림축산 식품부	-
72	돌산읍 평사리	1541-1	잡	1,302	1,302	신○일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1길 3 (종화동)
73	돌산읍 평사리	1541	제	7,896	7,896	농림축산 식품부	-
74	돌산읍 평사리	1542	제	3,717	3,717	농림축산 식품부	-
75	돌산읍 평사리	1543-1	유	1,140	1,140	농림축산 식품부	-
76	돌산읍 평사리	1543-2	유	2,215	2,215	농림축산 식품부	-
77	돌산읍 평사리	1543-3	유	114	114	농림축산 식품부	-
78	돌산읍 평사리	1543-4	유	36	36	농림축산 식품부	-
79	돌산읍 평사리	1543	유	26,724	26,724	농림축산 식품부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80	돌산읍 평사리	1544-10	도	3,110	1,416	국토해양부	-
81	돌산읍 평사리	1544-11	유	587	485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82	돌산읍 평사리	1544-2	도	495	495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83	돌산읍 평사리	1544-3	도	410	410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84	돌산읍 평사리	1544-4	유	26	26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85	돌산읍 평사리	1544	유	73,082	70,528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 빌딩)
86	돌산읍 평사리	산198-3	도	198	119	국토교통부	-
87	돌산읍 평사리	산201-3	임	172	23	기획재정부	-
88	돌산읍 평사리	산201-5	도	58	11	국토교통부	-
89	돌산읍 평사리	산212-14	임	1,100	1,100	강○숙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4길 19-4 (공화동)
90	돌산읍 평사리	산212-15	임	1,345	225	강○숙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4길 19-4 (공화동)
91	돌산읍 평사리	산212-16	임	603	603	기○회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87 코아루수아파트 102-903
92	돌산읍 평사리	산212-6	임	8,993	8,993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93	돌산읍 평사리	산212-7	임	1,102	1,102	이○진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395
94	돌산읍 평사리	산321	임	5,554	5,554	박○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204동 504호(청라동, 웰카운티)
95	돌산읍 평사리	산322-1	임	11,337	11,337	돌산○○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347-1
96	돌산읍 평사리	산322-2	임	37,953	37,953	이○영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50, 1006동 601호(원주롯데캐슬더퍼스트)
97	돌산읍 평사리	산322-3	임	5,805	3,306 2,499	강○희 안○숙	광양시 광영동 729-6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트 207-1303
98	돌산읍 평사리	산322-4	도	177	177	유○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7, 506동 1501호 (신창동, 신창5차호반베르디움아파트)
99	돌산읍 평사리	산322-5	임	6,612	3,306	김○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2-60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1,984	김○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074-8 현대아파트 102-804
					1,322	장○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70-1 공간아파트 101-513
100	돌산읍 평사리	산322-6	임	6,612	6,612	박○정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60, 103동 504호 (진월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01	돌산읍 평사리	산322-7	임	6,612	3,306	김○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70 현대아파트 101-1405
					1,653	최○수	광양시 광영동 740-6
					826.5	이○기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6 성호아파트 102-609
					826.5	하○미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4길 65, 107동 305호 (마동, 우림필유아파트)
102	돌산읍 평사리	산322-8	임	6,612	4,959	곽○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56
					1,653	송○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1길 43
103	돌산읍 평사리	산323	임	15,372	15,372	김해김씨 감무공파 ○○○○ 공분중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259-3
104	돌산읍 평사리	산326-1	도	58	58	이○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22
105	돌산읍 평사리	산326	임	2,719	2,719	이○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22
106	돌산읍 평사리	산327-1	도	74	74	유○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7, 506동 1501호 (신창동, 신창5차호반베르디움아파트)
107	돌산읍 평사리	산327-2	도	56	56	유○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7, 506동 1501호 (신창동, 신창5차호반베르디움아파트)
108	돌산읍 평사리	산327-7	임	6,817	6,817	라○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630-1 주공그린빌 아파트 205-801
109	돌산읍 평사리	산327	임	5,158	5,158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	송○화	광주광역시 동구 육판서길 17, 207동 1804호 (내남동, 내남2차진아리채)
110	돌산읍 평사리	산349-12	임	2,247	2,247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0, 103동 201호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111	돌산읍 평사리	산349-13	임	939	939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0, 103동 201호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112	돌산읍 평사리	산349-15	임	2,170	2,170	이○호	여수시 안산동 29 엘지사택 연립-1
113	돌산읍 평사리	산349-16	임	1,926	1,298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302	김○자	광양시 광영동 757-1 상아아파트 나-20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275 51	정○향 강○경	순천시 조례동 1611 중흥파크맨션 205-1508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114	돌산읍 평사리	산349-17	임	3,857	1,144 2,413 300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김○자 정○향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광양시 광영동 757-1 상아아파트 나-209 순천시 조례동 1611 중흥파크맨션 205-1508
115	돌산읍 평사리	산349-18	임	3,818	200 3,618	김○수 강○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계곡길 254-13 학동 50-5 거북맨션 2층 4호
116	돌산읍 평사리	산349-19	임	3,960	1,155 1,650 1,155	곽○수 곽○수 김○민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7길 17-4(신월동)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38(신월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56
117	돌산읍 평사리	산349-1	임	187,198	187,198 -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강○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학동 50-5 거북맨션 2층4호
118	돌산읍 평사리	산349-20	임	2,758	1,379 1,379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광양시 광영동 757-1 상아아파트 나-209
119	돌산읍 평사리	산349-21	임	4,656	1,000 1,983 370 1,303	주식회사 여수레저 개발 양○상 김○사 정○향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42, 105호 (송정동) 순천시 조례동 1630 중흥파크맨션 101-809 광양시 광영동 757-1 상아아파트 나-209 순천시 조례동 1611 중흥파크맨션 205-1508
120	돌산읍 평사리	산350-1	임	2,976	2,976	임○중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776
121	돌산읍 평사리	산351	임	496	496	류○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안2로 36, 107동 1509호 (풍암동, 주은모아아파트)
122	돌산읍 평사리	산351-1	임	1,091	1,091	남○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18-5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표류 및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계단, 바지선)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12월 1일(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11. 13. ~ 12. 1.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방치 계단, 바지선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5-3272호			
무 단 방 치 물(계단, 바지선)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안산동 713-2 일원(선수대교 인근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계단(4개), 바지선(2개)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11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2월 1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불임 참고	
위치도(선수대교 인근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 사진(시설물 6개)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5년 12월 1일(월)</u>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			

붙임

불법 시설물 사진



계단



바지선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식회사 광성개발 (송수란)	전남 여수시 주삼덕양로 203, 1층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여수-23-마-06)	206211-0090600	2025.11.12.	사업 포기

2. 공고 기간: 2025. 11. 13. ~ 2025. 11. 27.(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1. 10.

전라남도지사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 모집인원은 제한 없음
- 공고기간 : '25. 11. 10.(월) ~ 12. 12.(금)
- 공고방법 : 道, 22개 시·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게시

2. 등록자격

- 신청마감일('25.12.12.)까지 전라남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에 한함)
- ※ 2025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2026년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해 재신청하여야 함(운영기간 1년)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5. 11. 10.(월). ~ 12. 12.(금) * 근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건축개발과 도달분만 유효(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요망)
 - 등록신청 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처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
 -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①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붙임 1 서식]
 - ※ 1사무소 1신청서 작성
 - ②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행정처분조회서 제출 필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 ※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회는 우리 도에서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4.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만 명부 작성
- 결과공개 : '25. 12. 19. 이후(예정) 전라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개
- 지정(운영)기간 : '26. 1. 1. ~ 12. 31.(1년)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신청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감리자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061-286-77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자격번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고소동 346-1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11. 13.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고소동 346-1번지 외 4필지
(346-4, 345-8, 345-6, 345-4번지)
2. 도로면적 : 35㎡
3. 도로길이 : 22.3m
4. 도 로 폭 : 3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68	35	
고소동	346-1	대	116	5	
고소동	346-4	도로	30	1	
고소동	345-8	대	1	0.4	
고소동	345-6	대	27	0.6	
고소동	345-4	대	9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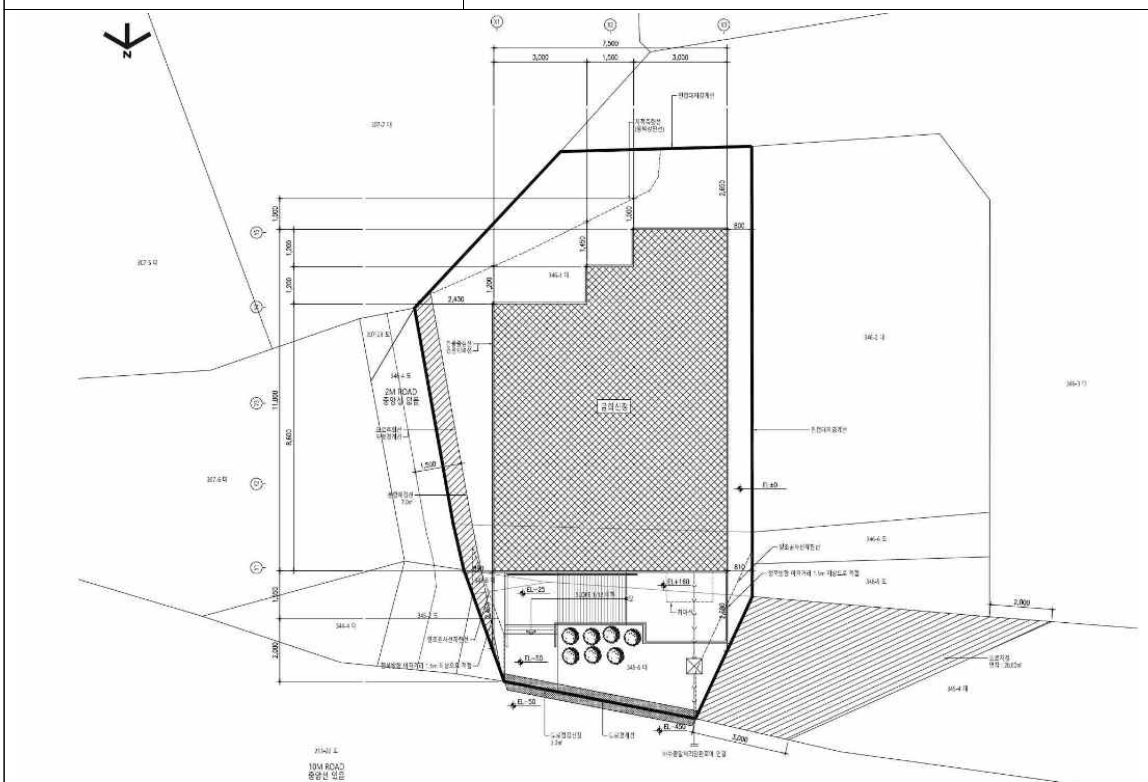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모집·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 나. 시행기관 : 여수시 관광과
- 다. 운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라. 대상시설

시설명	재산의 소재지	규 모		용 도	예정가격 (부가세미포함)
		부지	건물 연면적		
여수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여수시 여항단지로 205 (봉산동)	1,575㎡	928.9㎡ (1층) 471.65 (2층) 457.25	(1층) 특산품전시판매장 (2층) 전통음식판매식당	25,975,400원 (부지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20/1000

마. 예정가격 : 금25,975,4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가격의 10%)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필히 현장여건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제한입찰(지역제한-여수시)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및 지역(여수시) 제한이 있는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 가. 제출일시 : 2025. 11. 14. 10:00부터 2025. 11. 27. 16:00까지
- 나.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4.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1. 28.(금) 10:00
- 나. 개찰장소 : 여수시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주변여건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잘 파악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라.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단체·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마.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기타 지역 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단체 및 법인)
- 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사. 여수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아. 그 이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자

7. 입찰참가 방법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이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되며, 공동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하나위탁, 우리위탁입니다.

10. 보증금 등의 처리

-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을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관됩니다.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다만,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여수시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결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대한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5.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을 여수시(관광과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용허가 후 10일 이내에 허가조건의 내용 범위 내에서 이의 준수와 향후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자는 허가조건 각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16.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사용허가 전 제출서류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인감 증명서
 - 국세·지방세 등 완납증명서
- 나. 사용허가 후 제출서류(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행보증보험증권
 - 운영계획서

17. 기타 사항

-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비용·수익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목적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있으므로 여수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으로 하여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하여, 판매되는 제품은 우리시 특산품과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합니다.
- 다. 입찰안내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 공고내용을 우선합니다.
-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바. 온비드 이용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및 온비드 홈페이지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관광진흥팀(담당자 최서연 061-659-3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2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25,975,400원**(예정가격)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우리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제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판매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탁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재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산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 ② 부지면적 : 1,575㎡, 건물 928.9㎡(1층 판매장, 2층 전통음식점)

제3조(책임과 의무)

-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수탁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 ⑥ 수탁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 ⑦ 수탁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 ① 수탁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 품 및 우리시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 ③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 ④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 ⑩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② 수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비 등)

-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탁자가 변상한다.
- ④ 건물 본체의 벽체, 방수, 전기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우리시가 수선한다.

-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종사원 친절교육 실시) 수탁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 (수탁자 본인 포함, 이하 같음)에게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인계인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내 1층 특산품판매장 시설 기자재와 2층 전통음식점 운영에 따른 기자재 및 식기류는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산정)

-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 ②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다.
- ※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③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 ④ 다음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개시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 ⑤ 갱신 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를 “여수시(관광과장)”로 하여 사용허가일 10일 이내에 여수시(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여수시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행정처분)

-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1차 경 고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2	2차 경 고	
3	3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5조(판매점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판매점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우리시는 수탁자에게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우리시는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3]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봉산동 100-20번지)
 - 면 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 붙임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현황 1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②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 205(봉산동 100-20번지)
2. 운영대표자 :
3. 입주자 지정계획 :
4. 전시 및 판매품목 :
5. 판매방식 :
6. 판매제품의 수급 :
7. 제품의 판매가격 :
8. 전시판매장 개장 :
 - 개 장 일 :
 - 개장시간 :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견 :
12.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3.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②인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2차)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폐업되는 어선의 기관, 장비, 의장품 어구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 가. 건명 : 감척어선의 기관, 장비, 의장품, 어구 등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 감척어선 1척의 기관, 장비, 의장품, 어구 등 총 17점(붙임 목록 참고)
 - 기관·전자장비 보관 장소 : 감척대상 어선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음
 - 사업포기 등으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차율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함.
 - 매각 대상 물품은 우리 시와 계약한 어선해체처리업자와 협의 후 인수한다.
(도난 우려가 있는 전자장비, 의장품 등에 대해서는 대상어선 인수와 동시에 확인 후 어선해체 처리업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전자장비, 의장품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인수 할 수 있다.)
- 다. 매각 예정가격 : ₩ 9,129,900원(감정평가액 91,299,000원의 10%)
-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 2025. 11. 17.(월) 10:00 ~ 2025. 11. 21.(금) 18:00
- 마.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바. 개찰 일시 : 2025. 11. 24.(월) 10:00
- 사.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일반·법인사업자, 개인)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onbid](http://www.onbid.co.kr)” 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 또는 ” 하나위탁” 입니다.
-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시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onbid) 운용 담당자 (☎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시금고로 귀속됩니다.
- 나.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인수지연시 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
- 다. 기관·장비 매매대금은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의장품, 어구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은 소유자 관리 중으로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소유자 또는 여수시 수산경영과(☎ 061-659-3920)에 사전연락 요망

라.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분리) 시에 반드시 사업자(선박소유자),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해체(분리)작업시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도난 우려가 있는 장비에 대해 선박 해체 업체와 협의하여 즉시 선박으로부터 분리 할수 있다.

마. 천재지변 또는 어선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어선의 인수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된 기관 및 의장품을 어선으로부터의 해체(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운반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업포기 및 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폐업어선 품목별 입찰산정 금액으로 감액정산하여 차감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함.

사.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 문의처 : ☎1588-5321(온비드 시스템관리자)

○ 기관·전자장비 등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전남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0(담당자 : 정용운)로 문의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 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붙임 :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 끝.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 (별지목록)

위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여수시장 : 이하 “甲”이라한다)
과 매수인(이하 “乙”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기관·장비 등의 매매에 있어 “乙”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납한다.

매매대금	합	계	일금	원정(₩	)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
	금회입금액		일금	원정(₩	)

제2조 : 대상물건 폐업어선 중 공공용으로 활용계획 및 기타사유 발생 폐업어선에 시설된
기관·장비 등은 인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3조 : 기관·장비 등의 인계·인수는 개별 선주 및 우리시와 계약된 해체처리업체와 상의하여
선정된 해체장소에서 실시한다.

제4조 : “甲”의 해체처리업체 선정지연 등 기타의 사유로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 “乙”은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의 인수에 있어 “甲”의 인수일정 및 수량에 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 계약 후 “乙”은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 “乙”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매각 공고내용에 기재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이 교체,
분실,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 하고는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불가함)

제9조 : 기관·장비 등의 인수(선체에서 기관·장비 분리작업 포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乙”이 부담한다.

제10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인수 후에 기관·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위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乙”이 책임을
지며 “甲”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 : “乙”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甲”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 “乙”은 인계·인수된 물건에 대하여 인계·인수 즉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나 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 “甲”과 “乙”은 미 인계·인수 물건에 대하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년 월 일

매 수 인
(乙)

주 소 :
성 명 : (인)

매 도 인
(甲)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 24 - 여 수 시 장 (인)

기관 및 장비 등 인수인계서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 완료 하였는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시 / 장소 :

인수자 (매입업체)	성 명	(인)	
	주 소	(전화 :)	
인계자 (해체업체)	성 명	(인)	
	주 소	(전화 :)	
기관 및 주요 장비 등	품 목 명	수 량	제 작 연 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4.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두모리 1393-8번지 지선 공유수면	남면 두포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791.17㎡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1. 14. ~ 2025. 12. 4.(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1. 14. ~ 2025. 12. 4.(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실시계획인가일로 30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화정면 낭도리 499-28번지 일원	○면적 및 규모 - 면적 : 3,051㎡ / 해상교량 - 규모 : L= 892m, B= 3.0~3.5m	여수시장/ 여수시 신월로 648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여수시 관광과	2025. 11. 17. ~2025. 12. 1.(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1. 18. ~ 2025. 12. 1. (14일간) ※초일미산입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061-659-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 계 (6필지)					532	3,051						
1	화정	낭도	156-1	잡	117	25	국(기재부)					
2	화정	낭도	174-6	잡	78	42	국(기재부)					
3	화정	낭도	174-2	잡	191	29	국(기재부)					
4	화정	낭도	무지번	해		2,809	국					
5	화정	낭도	212-2	전	104	104	박*득 외 3인	경상북도 청도군 청*읍 청*로 1**				
6	화정	낭도	499-28	임	42	42	주식회사 도향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길 30-* *동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아 토지 상속인에게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8명(울촌 가장 9, 화양 이천 9)
2. 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1.(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울촌면·화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11. 17.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 예고한 바와 같이 납부 고지한 결과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1.(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읍촌면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11. 17.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아 토지 상속인에게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한 결과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화양옥적)
2.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화양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11. 17.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 -3316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7.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1. 30.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백석길, 박** 등 58건)
3. 공고내용
 -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 이동식) 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331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1. 30.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박** 등 99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차량안전 보호, 주차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등 필요구간에 CCTV 설치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5. 3. 18. ~ 2025. 4. 6.(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주차장명	위 치	카메라 수량	촬영시간	운영기관
이순신광장 공영주차장	중앙동 383	3대	24시간	여수시청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3. 18. ~ 2025. 4. 6.(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59)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예고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5-3325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024	어류등 양식	가두리식	0.738	경호동 송도	2025.12.09. 2035.12.08.	여수시 신월로 56**	임*윤 외 1	11051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11. 18.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79번지 외 1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삼산면 서도리 1278번지	22.5	14	200	도로대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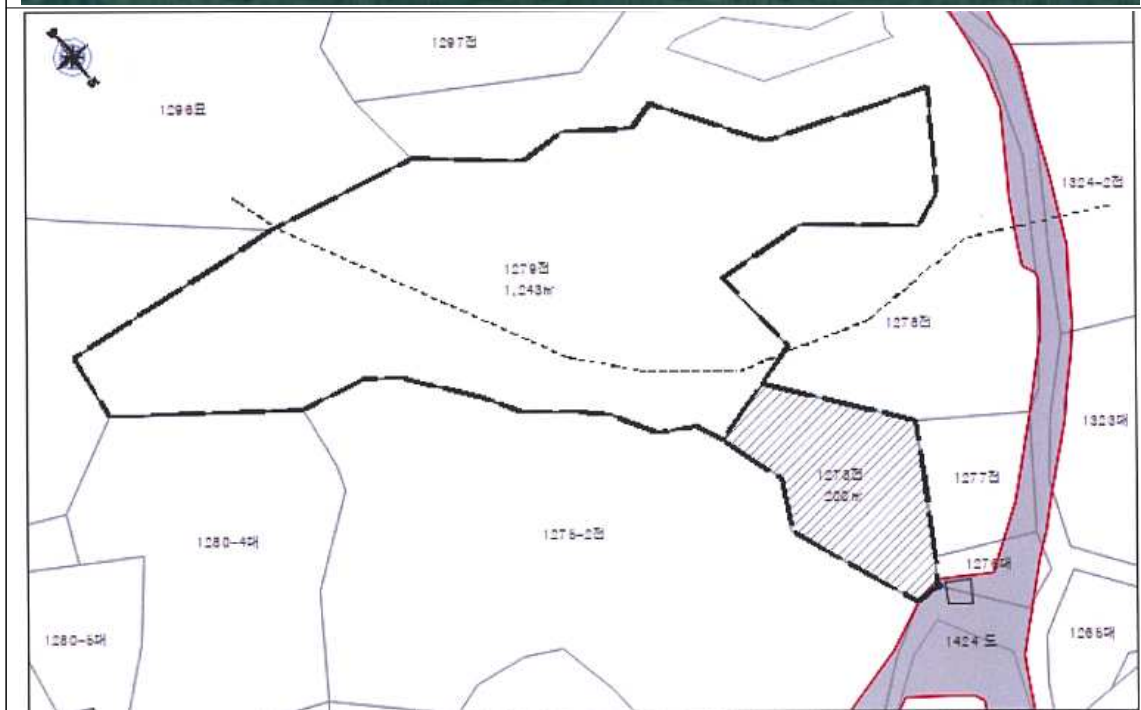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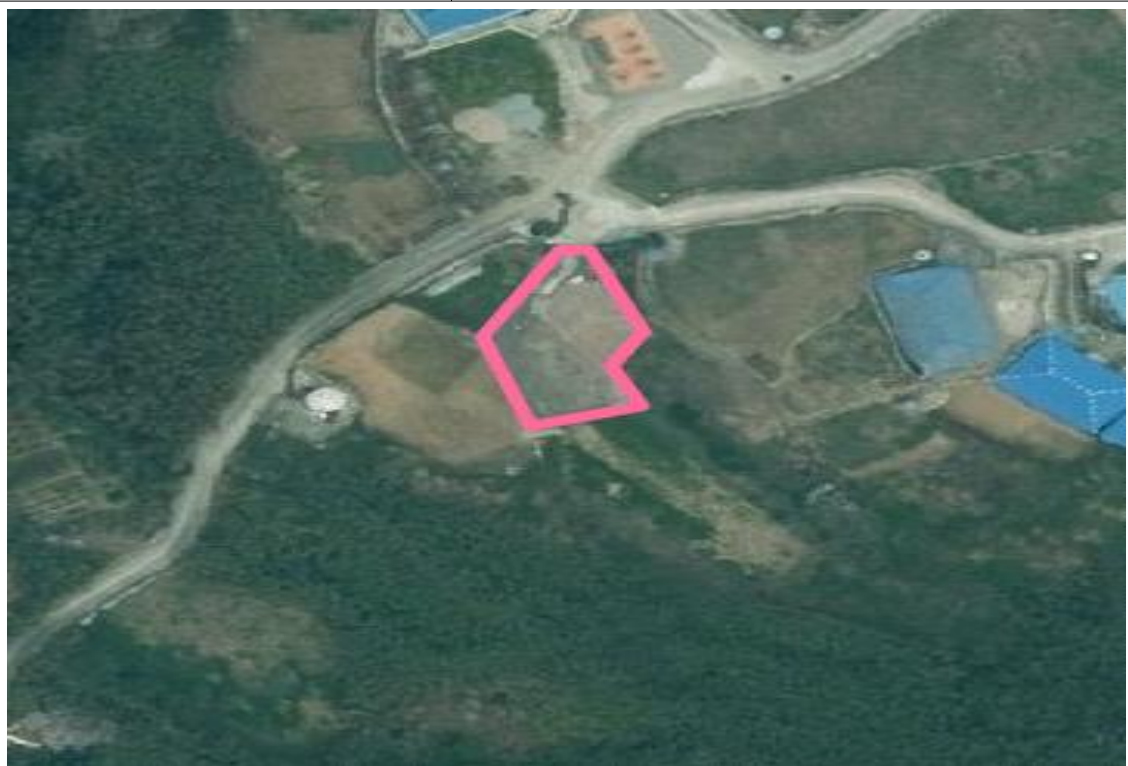
2.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

여 수 시 장

위치도 및 현황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신송 (박영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004-10-10)	영업정지 4개월 (2025.11.18.~ 2026.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 공고 기간: 2025. 11. 18. ~ 2025. 12. 2.(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권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8일

여 수 시 장

2026/2027년도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안내

「수산업법」 제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7.1.부터 2027.6.30.까지 개발할 수면에 대한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기본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발을 희망하는 대상 어업권자 및 양식업권자는 기한 내 어업생산과를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여 수 시 장

1. 기 간 : 2025. 11. 24. ~ 12. 9.(16일간)
2. 장 소 :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양식정책팀
3. 개발방향
 - (신규개발) 원칙적 금지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개발
 - (대체개발) 확대개발 금지, 제한적으로 개발 및 재배치 사업 반영
 - 최근 2년간 사법 및 행정처분 받은 어업권(자) 및 양식업권(자)은 개발대상 제외
 - 기타사항은 붙임[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참조
4. 조사대상 : 2026. 7. 1. ~ 2027. 6. 30. 중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양식장)
소유자 및 대체개발을 희망하는 자
5. 조사방법 : 면담 및 서류 검토
6. 지 참 물

- (공통) 기초자료 서식,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동의서 등
 - 어촌계일 경우 : ① 어촌계 직인+어촌계장 사인 ② 해당 어장관리규약
및 양식장 관리규약 사본 ③ 어촌계 회의록
 - 개인(협업)일 경우 : ①개인(협업자 전원) 도장
- ※ 문의사항 : 어업생산과 박경훈 주무관(☎061-659-3931)

붙임 1. 안내문 1부.

2.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1부. 끝.

※ 2025년도 지침 준용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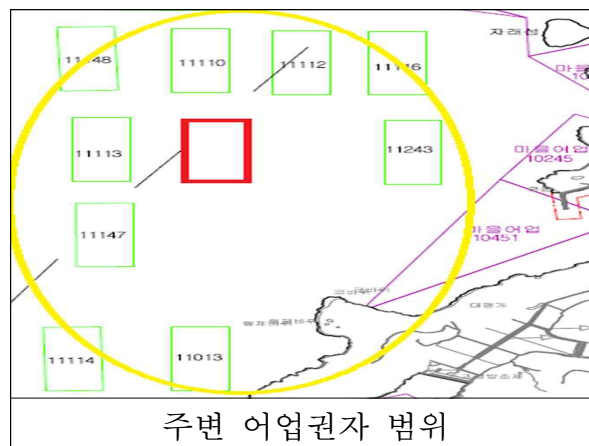
1. 제출서식

- 면허양식장(패류, 어류등, 해조류, 복합, 협동) 이용개발계획 수립 기초자료 : 붙임 1
- 어장(마을, 정치망) 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 붙임 2

2. 세부지침 주요사항

- 신규개발 원칙적 금지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개발
- 기존 양식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업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 ※ 패류양식업 중 수하식·가두리식,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식 및 이들 양식 방법을 포함한 복합양식업 개발 불가
- 수산업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수면에 어장 및 양식장을 대체 개발(이설)할 때는 그 분쟁이 사전에 해결하여야 함

※ 개발수면 주변 어업권자 및 어선어업, 잠수기어업 등 타 업종 동의서 제출



-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개발·대체개발 불가
- 최근 2년간 사법 및 행정처분 받은 어업권(자) 및 양식업권(자)은 개발 대상 제외

3. 제출서류

- 개발수면의 측량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부(좌표 및 평균수심 표시)
- 대체개발, 신규개발은 적지조사 결과보고서 2부 및 전자파일을 12.31.까지 제출

※ 적지조사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세부지침 별표1 ‘해면양식장 적지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업체 의뢰)

☞ 타기관 협의 기간 감안, 반드시 **기초자료 제출기한(2025.12.5.) 준수**

4. 기초자료 작성 요령

- (기존 면허번호) 대체개발, 재개발하려는 어장 면허번호 기입(신규 공란)
- (개발유형) 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 (개발사유) 개발하려는 목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개발위치) 00면 00지선(예, 화정면 월호지선)으로 표기
- (개발면적) 측량사에서 작성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상 표시된 면적 기입
- 어장일 경우 (어업종류) 마을어업, 정치망어업으로 기입
- 양식장일 경우 (양식업종류)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해조류양식 등으로 기입
- (품종) 양식하고자 하는 품종 기입, 마을어업은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로 기입
- 대체개발일 경우 (동의서) 개발수면 주변 어업권자 및 어선어업, 잠수기어업, 인근 어촌계등 동의서를 첨부하고 첨부 여부 기입
- 어촌계 회의록은 반드시 직인과 사인을 날인하고 참석자 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조사 기초자료

- ☐ 기존 면허번호 : 제 호
- ☐ 개발유형 :
- ☐ 개발사유 :
- ☐ 개발위치 :
- ☐ 개발면적 : ha
- ☐ 양식업종류 :
- ☐ 품 종 :
- ☐ 주변 예견되는 피해자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조사 기초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제출자 (주소)

(성명)

(직사인)

(연락처)

- 별첨
1.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부.
 2. 동의서(어선어업대표자, 잠수기어업대표자, 주변어업권자 등) 각 1부.
 3. 적지조사결과보고서 2부.(재개발 제외)
 4. 어촌계 회의록(어촌계 경우) 1부.

여수시장 귀하

동 의 서

■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 내역

수면 번호	개발 품종	면적 (ha)	수면 위치	개발희망자		동의기간
				주 소	성 명	

본인은 위 수면의 이해관계인(어촌계)으로서 개발희망자가 개발하는데 동의하며 이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하겠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어촌계가 동의하는 경우 총회 회의록 첨부

2025. . .

동의자 주소 :
성명 : (직사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어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조사 기초자료

- ☐ 기존 면허번호 :
- ☐ 개발유형 :
- ☐ 개발사유 :
- ☐ 개발위치 :
- ☐ 개발면적 :
- ☐ 어업종류 :
- ☐ 품 종 :
- ☐ 주변 예견되는 피해자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조사 기초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제출자 (주소)

(성명)

(직사인)

* 어촌계 경우 직+사인

- 별첨
1.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부.
 2. 동의서(어선어업대표자, 잠수기어업대표자, 주변어업권자 등) 각 1부.
 3. 적지조사 결과보고서 2부.(재개발 제외)
 4. 어촌계 회의록(어촌계 경우) 1부.

여수시장 귀하

동 의 서

■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 내역

수면 번호	개발 품종	면적 (ha)	수면 위치	개발희망자		동의기간
				주 소	성 명	

본인은 위 수면의 이해관계인(어촌계)으로서 개발희망자가 개발하는데 동의하며 이후 어업면허 처분을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하겠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어촌계가 동의하는 경우 총회 회의록 첨부

2025. . .

동의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표 1]

해면양식장 적지조사 기준

조사항목	구분	패 류					
	품종	굴	백 합	꼬 막 류 (피조개, 새꼬막, 꼬막)	바 지 락	가무락, 동죽	전 복
수 온		5~30℃	석온3~35℃	6~28℃	석온 0~36℃	3~40℃	3~28℃
염 분		20~35	20~35	11~35	20~37	20~35	27~35
영 양 염 류 ○ 용 존 무 기 인 ○ 용 존 무 기 질 소		0.04 mg/L 이하 0.14 mg/L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용 존 산 소		3.0 mg/L 이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수소이온농도(pH)		7.8~8.2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저 질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산화발성황화물 (AVS)		30 mg/g 이하 0.5 mg/g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담 수 유 입		직접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오 염 원		인근에 오염원이 없고 부영양화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풍 파		시설물 유실우려가 없는 곳	지반변동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시설물 유실우려가 없는 곳
기 타		기타 필요한 사항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조사항목	구분	패 류			해 조 류			
	양식방법/품종	가리비류 (비단가리비, 해만가리비)	참가리비	진주조개	김	미 역	다 시 마	툰
수	온	5~28℃	5~23℃	8~30℃ (7개월이상 유지)	19~23℃(9~10월) 5~10℃(3개월이상 유지)	7~13℃	15~20℃(6월평균) 5~14℃(3개월이상 유지)	5~25℃
염	분	20~35	27~35	20~35	20~35	27~35	27~35	27~35
영 양 염 류 ○ 용 존 무 기 인 ○ 용 존 무 기 질 소		0.04 mg/L 이하 0.14 mg/L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0.04 mg/L 이하 0.07~0.14 mg/L	0.04 mg/L 이하 0.14 mg/L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용 존 산 소		3.0 mg/L 이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수소이온농도(pH)		7.8~8.2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저 질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산화발성황화물(AVS)		30 mg/g 이하 0.5 mg/g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담 수 유 입		직접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오 염 원		인근에 오염원이 없고 부영양화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풍 파		시설물 유실우려가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기 타		기타 필요한 사항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조사항목	구분	어 류			기 타	
	품종	돔류	볼락류 송어류 농어류	능성어류	우 령 썩 이	해삼
수 온		8~28℃	6~28℃	10~30℃	5~24℃	2~26℃
염 분		26~35.0	좌 동	좌 동	26~35	28~34
영 양 염 류 ○ 용 존 무 기 인 소 ○ 용 존 무 기 질 소		0.04 mg/L 이하 0.14 mg/L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용 존 산 소		3.0 mg/L 이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수소이온농도(pH)		7.8~8.2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저 질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산화발성황화물(AVS)		30 mg/g 이하 0.5 mg/g 이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수 심		가두리식 : 30 m 이내 (가두리시설이 가능한곳) 축제식 : 10 m 이내	좌 동	좌 동	10~70 m	30 m 이내
담 수 유 입		직접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오 염 원		인근에 오염원이 없고 부영양화 영향이 없는 곳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풍 파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기 타		기타 필요한 사항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설치 (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여 수 시 장

2025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2025년 기부채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구간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학동 157 KT여천지점 삼거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2025. 12. 21.
2	학동 157 시청로타리 주차장 삼거리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2월 10일 18:00, 20일간

4.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5. 11. 20.(목) ~ 12. 10.(수) 18:00, 20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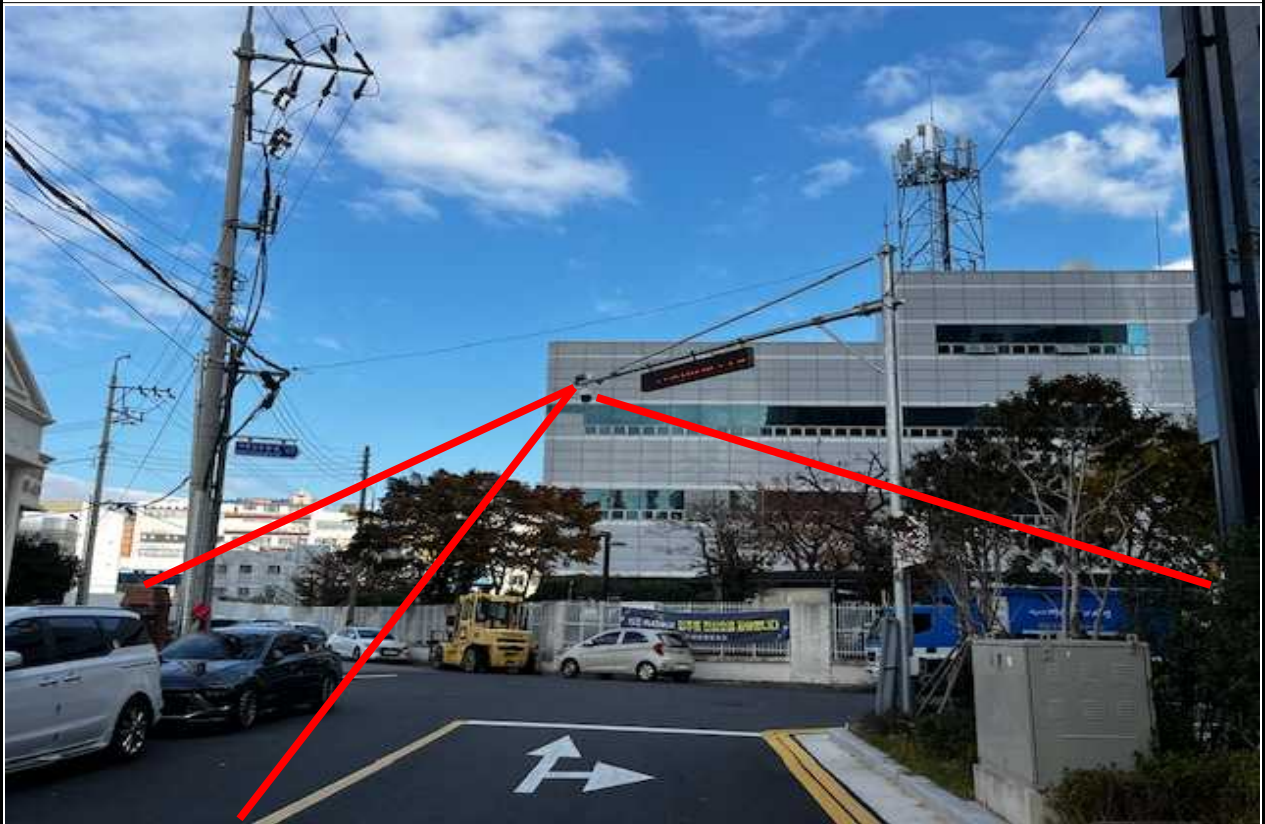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학동 157 KT여천지점 삼거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② 학동 157 시청로타리 주차장 삼거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여수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화양면 안포~굴구지 농어촌도로(302호선) 개설(1공구)」 시행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공고 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여 수 시 장 (인)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화양면 안포~굴구지 농어촌도로(302호선) 개설(1공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3-2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 7,808㎡ - 규모 : L=500m, B=8~10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도로노선 지정 공고 사유

○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교통편의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기간 : 노선 지정 공고일로부터 ~ 2027. 12. 31.

4.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1. 20. ~ 2025. 12. 4. (14일간)
- 장 소 : 여수시청 도로과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23 1층(학동)]
- 열 랐 방 법 : 여수시 도로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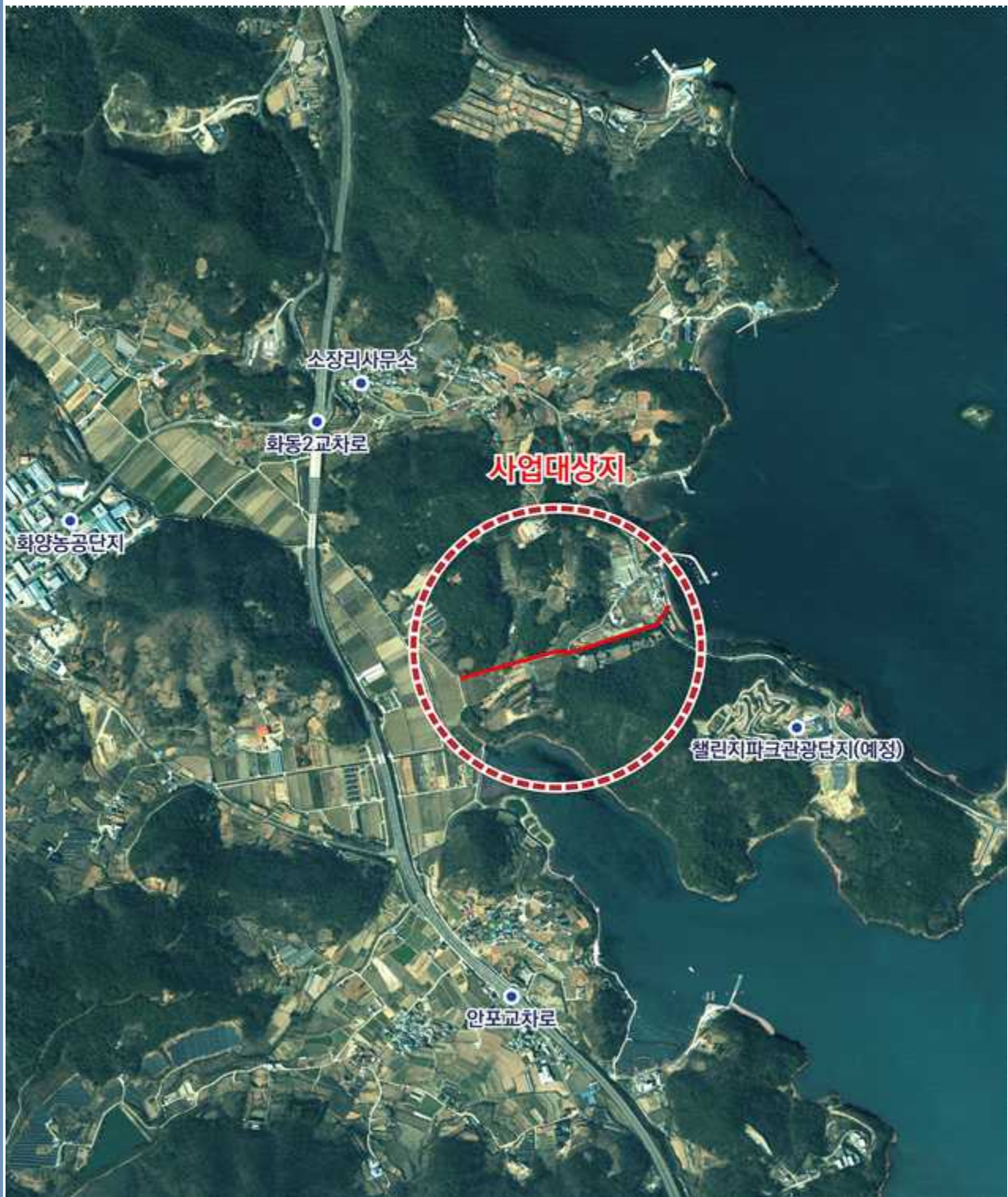
- 제 출 기 간 : 열람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 기간 종료일까지
-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과 (☎061-659-4569)

6.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불임

7. 출입 통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출입기간	출입할 토지	출입사유	비고
2025.11. ~ 사업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불임 토지조서 참조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위치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0-18	도	102	6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2	“	19-1	대	948	27	정*자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문수동)	여*농* 협*조*	문수로**	근저당	
3	“	20-17	대	435	3	최*엽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4	“	740-2	도	96	16	국(건설부)					
5	“	산333-7	도	120	120	여수시					
6	“	23-2	도	143	143	여수시					
7	“	36-5	장	4,986	61	유한회사*일* 업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8	“	34-3	임	797	772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여*농* 협*조*	학동*길**	근저당 권	
								여*농* 협*조*	학동*길**	지상권	
9	“	36-3	장	11,960	115	유한회사*일* 업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광*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	근저당 권	
10	“	36-1	도	89	58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11	“	산331-3	임	786	647	손*순	여수시 신기동 *** 부영아파트 ****				
12	“	산331-5	임	966	12	이*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동 ***호(여서동, 부영)				
13	“	39-3	전	228	121	이*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동 ***호(여서동, 부영)				
14	“	39-2	도	288	288	고**용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15	“	40	답	3,587× 1/3	76× 1/3	이*석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 ***동***호(중동, 한라마을)				
				3,587× 1/3	76× 1/3	이*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중*새* 을금고	교동남*길 **	근저당 권	
				3,587× 1/3	76× 1/3	이*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16	“	42-1	도	337	267	이*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17	“	산331-1	임	20,730	23	유한회사*지* 업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 (가곡동)	여*새* 을*고	여서*로** -*	지상권	
18	“	산287-3	임	158	99	최*엽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19	“	48-3	답	139	122	최*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장길 ***				
20	“	50	답	988	2	최*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장길 ***	화*농* 협*조*	화양면 나진리***	근저당 권	
21	“	742	구	186	20	국(국토교통 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면동			토지 대장	편집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22	“	815-3	답	1,981	5	장*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23	“	21	도	1,808	92	여수시					
24	“	23	도	208	99	여수시					
25	“	23-1	답	849	99	홍*식	광주 서구 농성*동 ***- 삼익아파트 *동 ***호				
26	“	35	도	132	72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27	“	34-1	전	2,969	1,217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여*농* 협*조*	학동*길**	근저당 권	
								여*농* 협*조*	학동*길**	지상권	
28	“	34-2	답	711	12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여*농* 협*조*	학동*길**	근저당 권	
								여*농* 협*조*	학동*길**	지상권	
29	“	37-1	답	1,011	161	정*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30	“	37-2	도	33	33	장*천	여천군 화정면 낭도리 **				
31	“	39-1	전	238	94	이*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동 ***호(여서동, 부영)	(유)창* 산*	화양면 나진리** *	근저당 권	
								서*보* 보*(주)	서울특별 시 종로구 연지동*** _**	근저당 권부채 권압류	
32	“	38-2	도	40	40	이*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33	“	38-1	전	2,899	65	정*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동 ****호(중흥)	여*농* 협*조*	학동*길**	근저당 권	
								여*농* 협*조*	학동*길**	지상권	
34	“	41-1	도	69	69	이*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				
35	“	740	도	796	184	국(국토교통 부)					
36	“	산286	임	14,895	440	신*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호				
37	“	산287-1	임	8,430	253	박*환	안포리				
38	“	산287-2	임	1,726	779	이*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동 ***호(여서동, 부영)	여*새* 을*고	여서*로 **_*	지상권	
39	“	48-1	답	423	62	최*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장길 ***-*				
40	“	48-2	도	109	109	김*평	여수읍 서정***				
41	“	산288	임	2,937	798	최*호	광주 북구 용봉동 1074-6 한신아파트 ***-****				
42	“	839	구	1,028	127	국(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91,361	7,808						

■ 수용되거나 사용할 지장물 세목조서

연번	위 치	종류	수량		비고
1	화양면 나진리 34-3	한전주	3	주	
2	화양면 나진리 산331-3	한전주	1	주	
3	화양면 나진리 37-2	한전주	1	주	
4	화양면 나진리 39-2	한전주	1	주	
5	화양면 나진리 42-1	한전주	2	주	
6	화양면 나진리 산287-1	한전주	1	주	
7	화양면 나진리 산287-2	한전주	1	주	
8	화양면 나진리 산288	한전주	1	주	
합 계			11	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등록이 통보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 체 (대표자)	소 재 지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내역 (말소일자)
원테크주식회사 (박정현)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944-45, 2층	가스·난방공사업 (경기시흥2018-1 0-31)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록말소 (2025.11.12.)

2.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3.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문의사항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

2025. 11. 19.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9.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43, 산636-14, 산638, 1547-2 지선 공유수면	콘크리트 전주 설치	528.636㎡	허가일로부터 1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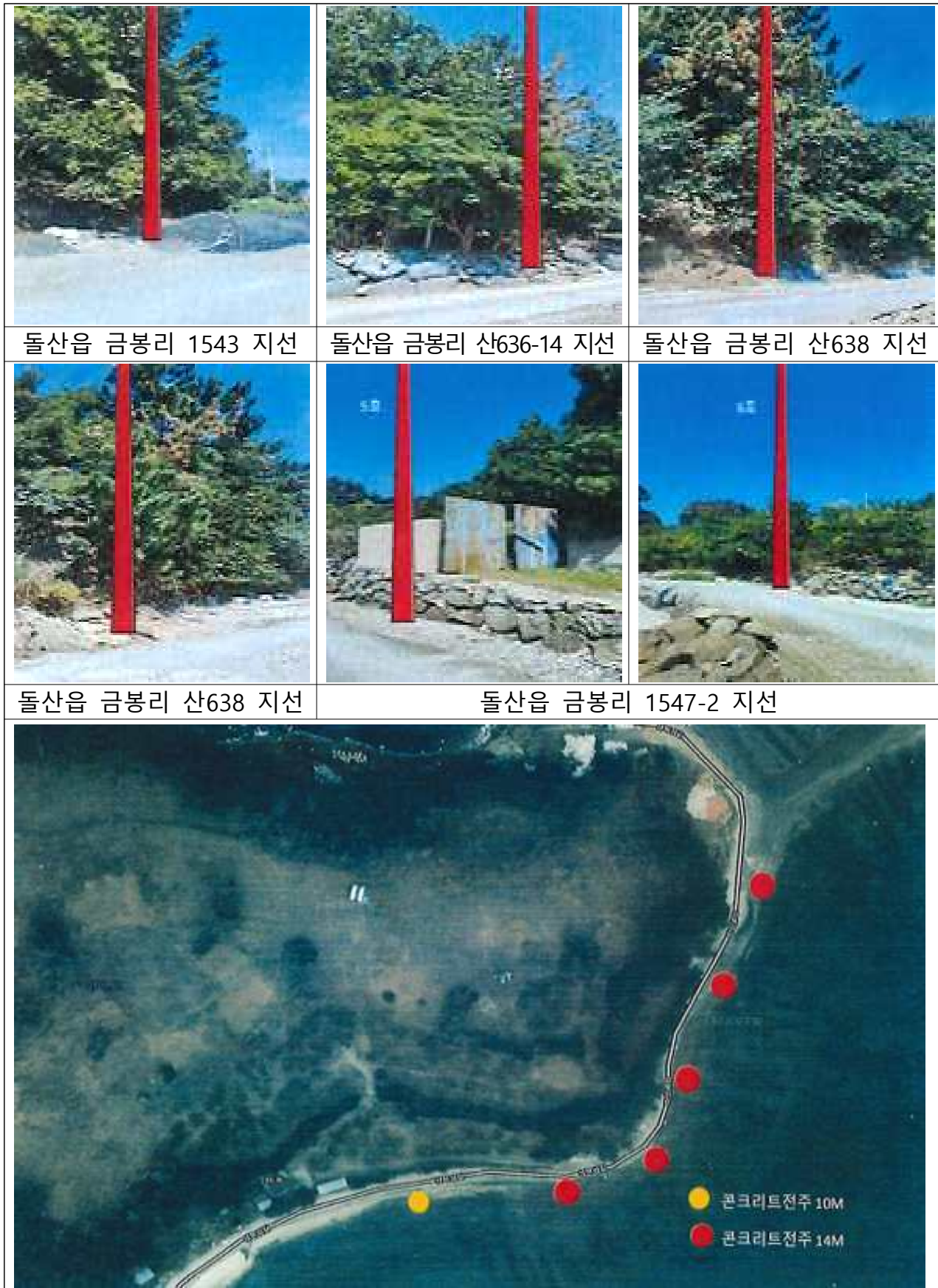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1. 19. ~ 2025. 12. 2.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1. 19. ~ 2025. 12. 2.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공고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여 수 시 장

I 안내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정자 명단에 최소한의 식별정보만 공개하였으니, 공개된 정보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 061-659-3426)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기간 중 자격요건 미비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신규 선정자 명단

□ 선정 결과 : 66가구

연 번	성 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1	강*망	3178
2	고*현	1808
3	곽*성	8515
4	김*태	7761

연 번	성 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5	김*순	3405
6	김*훈	5227
7	김*진	7827
8	김*신	1735
9	김*욱	6496
10	김*솔	2387
11	김*	1776
12	김*익	0227
13	김*진	9728
14	김*석	9130
15	김*준	6902
16	나*미	9565
17	노*준	4404
18	박*선	1556
19	박*규	0747
20	박*주	2257
21	배*영	2680
22	배*우	5374
23	백*룡	7671
24	서*영	5378
25	신*리	2619
26	신*은	7026
27	신*설	0063
28	안*현	8210
29	안*도	4081
30	양*진	6791
31	양*석	8716
32	이*영	5315
33	이*함	7772
34	이*산	1140
35	이*재	4906

연 번	성 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36	이*희	8134
37	이*림	9084
38	이*동	7023
39	이*철	8560
40	이*기	1646
41	이*선	3126
42	이*연	9412
43	이*이	4593
44	임*현	3326
45	임*호	8283
46	장*인	9855
47	장*경	9128
48	정*빈	1355
49	정*용	3081
50	정*샘	1225
51	정*수	1009
52	조*욱	8447
53	조*훈	8389
54	조*호	5418
55	주*진	9307
56	지*환	0519
57	차*희	2569
58	최*광	8860
59	최*원	2874
60	최*훈	1115
61	최*영	4738
62	최*빛	1875
63	한*진	1444
64	허*준	3220
65	홍*욱	4574
66	황*민	6018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 적	허가받은 자		변경사항(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10-2 (2025.11.17.)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06번지 앞 지선	60㎡	육상양식장 인배수로	여수시 화백해안길 57	김미나	2020.11.12. ~ 2025.11.11.	2025.11.17. ~ 2030.11.11.

2025년 11월 17일

화 정 면 장